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사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66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3-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07

진 된 장

정 보 공 개 서

(주)진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진 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99-9058 F A X : 02-983-36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 1599-9058

가맹사업본부 주소 :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00-4, 1층 101호(수유동)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00-4, 1층 101호(수유동)

홈페이지 : www.진된장.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식회사 진담의 "진된장")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진된장"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진담	진된장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00-4, 1층 101호(수유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11.23	2020.11.24	정만희	1599-9058	02-983-3655
	법인등록번호	110111-7692274	사업자등록번호	824-87-0174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 이사	(주)진담 /정만희	진된장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00-4, 1층 101호(수유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만희	1599-9058	02-983-3655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진된장'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진된장	
상 호	진된장 000점	
상표(서비스표)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8,843	25,755	-6,911	68,490	27,000	-27,104
2022년	13,990	58,451	-44,461	46,110	-37,609	-37,549
2023년	32,968	73,223	-40,255	325,037	-44,332	-44,293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정 만 희	대표이사	'21. 11 ~ 현재	대표이사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진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사용 기간)
-	-	-	-	-	-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중 출원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상표권출원자와 [진된장] 상표권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진된장'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0	6				6
2023	6	24		1		29

6. '진된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매출액은 2023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9	22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 지점	1588-9999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진된장'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크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설비, 집기, 의탁자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주)진담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주)진담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각 회사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11,000	가맹계약체결 즉시	가맹본부법을 위반하고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3,300	가맹계약체결 즉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가맹계약체결 즉시	최초 계약기간 미준수 및 계약내용의 미준수, 위반 등	계약내용, 최초 계약기간 등의 계약준수를 담보 및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담보하고 상품대금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합계	17,3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 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점포크기 : 33㎡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41,250	4,125			33㎡(10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미지정)	16,500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작 5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평수에 따라 차등 적용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미지정)	4,950		간판공사 5일전		
장비 및 주방기기	협력업체 (미지정)	11,000		설치 5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집기류	협력업체 (미지정)	3,850		설치 5일 이전		
POS	협력업체 (미지정)	임대		설치 5일 이전		
초도물품 등	당사	4,95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 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당사의 설계도면 제공비와 당사의 인테리어 컨셉 사용 대가로 3.3㎡당 일금 삼십삼만원(330,000원/VAT포함)을 지급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점희망자임 -다만, 당사는 통행인의 수, 시장특성, 통행인의 특성, 업종의 특성 등 가맹점희망자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 사	매월 330	계약후 한 달이 되는 날부터 매월 같은 일자	월 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광고 분담금	당 사	상품광고 50%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 판촉비의 일부를 가맹점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판촉 분담금	당 사	판촉 50%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판촉행사 집행 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당 사	사전 통지	교육 실시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협력업체	교체실비	간판 등 변경 이전		간판 변경 후 반환 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자연이자	당 사	미지금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부여 등으로 상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별 1회	문 의: 당 사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위생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년 1회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분기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관리나 시장구조의 변화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으로 점포이전, 노후시설의 보수 혹은 교체, 메뉴 및 판매가 조정 등을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진된장]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 ② [진된장]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진된장]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③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 ④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침해일 익일부터 손해배상에 정액으로 1일당 일금 오십만 원정(₩5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 ~ 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진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진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진된장]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진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명성과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족발 및 된장찌개 전문점	진된장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계약매장에서 반경 500m 를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영업지역 확인서 상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 영업지역을 표시함(단, 경계선을 불포함하며 표시 안쪽 지역임). 지도 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특수상권은 영업지역 확인서 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 지역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진된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79%	2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진된장’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9조)
○ '을'이 제3조[거래자의 기본 요건]의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이 제11조[로열티]와 제26조[물품 및 상품 대금의 지급 등] 등 가맹계약상 규정된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을'이 본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공한 첨부 서류의 내용이 고의로 위·변조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
○ '을'이 제22조[영업의 양도] 제1항, 제2항, 제8항, 제9항 등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차, 또는 질권 설정한 경우
○ '을'의 '갑'에 대한 채무액 및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을'이 제25조[물품 및 상품의 조달과 관리] 제5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을'이 제38조['갑'의 계약의 갱신 거절 등]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이 제35조['을'의 의무]에 규정된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 '갑'이 약정한 물품 및 상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계 된 경 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양도는 소정의 지급수수료를 납입하고, 양도인의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0일 전까지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및 양수인, 가맹본부가 양수도 계약 체결(5일정도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창업팀 (1599-9058)

가맹점 양도양수 시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 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행사나 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진된장]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족발 및 된장찌개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진된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다음날 01:00 (14시간)	월 26일 이상	문의: 운영팀 (1599-9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진된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

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 광고·판촉 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판촉비의 100%	-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 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 접 판매하는 상품 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 품, 기념품, 팸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디 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 작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시작 15일 이전까지 광고문안 및 판촉내용, 판촉활동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행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된 인쇄물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4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24시간 이후 05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05일 이후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오십만원(₩5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협의하지 않고 폐점처리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1(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및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는 가맹금을 예치할 당시 점포를 이미 확보했을 경우이며, 점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점포를 개발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나, 부득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고객만족센터 1599-9058).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을 개선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진된장'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 또는 알선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진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양수 교육				
보수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진된장'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5일 (현장교육포함)	3,300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 는 금액임 -조리실습비 포함
양수 교육	5일 (현장교육포함)		
보수 교육	필요 시 산정	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귀하는 본사에서 기본이수교육 및 귀하의 가맹점 현장에서 리허설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이수교육은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에, 리허설교육은 기본이수교육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직영점 주소
1	서울	수유점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100-4
2	서울	역삼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지하3층 204(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5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기획팀(1599-905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재무제표 | 별-1 |
| 2. 메뉴 가격표 | 별-2 |
|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 별-3 |
| 4.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 별-4 |
| 5.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5 |
| 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6 |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1) 설비·주방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원 · 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가맹사업 초기로 아직 설비를 비롯한 원·부재료, 상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한 공급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 상기 물품은 가맹본부의 사정이나 사업 계획 확립 과정에서 변동·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진된장]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진된장]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